충청북도 공고 제2022 - 1279호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지원대상 모집공고(3차)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정정하여 공고합니다.

※ 정정사유: 자동차 도장시설 대상 사업 재개

2022년 9월 8일

충청북도지사

1. **사 업 명** : 2022년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2. **총사업비** : 15억원(국비 50%, 도비 40%, 자부담 10%)

3. **지원내용**

○ **(지원내용)** 대기오염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저녹스버너 설치비용

○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 비용의 90% (국비 50%, 도비 4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6.2억원	최대 8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5.6억원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붙임1]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최대 4억원(보조금 3.6억원)을 기준으로 하며, 필요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구 분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설치비 한도	310 ~ 410만원
지원액(국비+도비)	279 ~ 369만원

4.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
  ※ 예산이 충분한 경우 1~3종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간주
- **(저녹스버너만 해당)**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
-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서 중복지원 불가)
- 1톤 미만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 **(지원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과 해당 방지시설에 연결된 배출시설에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를 부착하여 한국환경공단 소규모 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www.greenlink.or.kr)으로 자료를 전송하여야함.

5. 방지시설 설치 사업 참여기준 및 사업장 선정

○ **(사업 참여기준)**「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 사물인터넷(IoT)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 업체의 의뢰하여 설치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예외

○ **(사업장 선정)** 사업장에서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제출

○ **(우선 지원대상)**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1개의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사업장
-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에 소재한 사업장

- 배출허용기준 신설 및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의 사전기술 진단 결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업장

※ 충북녹색환경지원센터 043-268-4560~1, 충북·세종환경보전협회 043-231-9577~8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착지원 사업만 참여하는 경우>

○ **(지원대상)** 공고일 현재 충청북도 내 국가 또는 일반산업단지에 소재하면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면서
  ·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른 사물인터넷(IoT)측정기기 부착의무화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면제시설 중 자가측정면제와 관련하여 부착하려는 사업장

○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 **(우선 지원대상)** 번호순으로 우선 지원

① 방지시설 면제신청 습식시설 ② 4종 사업장 중 신규 시설 ③ 5종 사업장 중 신규 시설 ④ 기존 시설

6.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7.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 접수(구비서류 원본 1부, 사본 PDF파일 제출)

○ 방문접수 : 직접 기후대기과로 방문하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우편접수 :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운송료 지원자 부담)
- 보내실 곳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2, 충북도청 기후대기과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담당자 앞

8. 주요 구비서류(구비서류 원본 1부, 사본 PDF파일 제출)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2]

○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1부[구비 서류1 양식 필히 참조]
-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1부

*공사원가계산서를 '22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 사업장 위치도 1부

○ 사업자등록증(보조사업자, 시공업체) 사본 1부
○ 최근 1년간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 중소기업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사본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1부
○ 이행확인서(보조사업자, 환경전문공사업체 각각 작성) 각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보조사업자) 각 1부
○ 건축물 대장, 임대차계약서(해당할 경우, 소유권 확인용) 각 1부
○ 사후관리 이행동의서 1부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계획서 1부

9. 사업장 선정평가 항목 및 배점

○ 사업장 여건, 방지시설 노후 정도, 우선 지원조건 등을 평가[붙임11]

10. 사업비 집행

○ 보조사업자와 계약 체결한 환경전문공사업체가 3개월 이내에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의 설치를 완료하고「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5]

* 공사완료보고서, 자가측정결과기록부 사본,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자부담금 및 부가세 입금 확인증,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부가세 포함, 2년 5%), 국세·지방세완납증명서, 세금계산서(세부 거래명세서 포함), IoT측정기기 부착완료 신고서 등 구비서류 포함

○ 보조금 지급신청서 제출 시 배출업체 대표의 위임장[붙임8],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포함) 및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기록부**를 함께 제출

- 배출업체 대표자의 서명으로 보조금 청구·수령 권리를 위임받은 것으로 간주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때에는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이 경우 위임장에 인감으로 날인 하지 않고 본인 서명을 함

** 공사 완료 후 자가측정 시 유량이 80% 이상으로 측정되어야 함

※「지방회계법」제35조 및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 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11. 보조금 회수

○ 준공검사 시 신청서 등과 현장이 상이할 경우 보조금의 일부를 취소 또는 환수할 수 있음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사업장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못해 개시일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시설 준공신고서 등 제출된 서류(자가측정 자료,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등), 대기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기록부 상의 적산전력계 전력사용량 등의 기록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시점으로 판단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4. 사업장이 이전하는 경우 이전 계획을 제출하고, 이전 후 IoT 관리시스템으로 계측자료를 전송하고 적정 관리하는 경우 보조금 미환수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의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12.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 공고일로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보조사업 대상자 확정 및 통보 : 개별 통지

○ 방지시설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신청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1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환경산림국 기후대기과 대기관리팀(☎043-220-433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방지시설,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한도 1부.
2.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2의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저녹스버너) 참여 신청서 1부.
2의3.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
3.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사전 기술진단 신청서 1부.
4.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 착공신고서 1부.
4의2.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지원사업 착공신고서 1부.
5.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5의2. 보조금 지급신청서(사물인터넷 IoT 부착지원) 1부.
6. 사물인터넷 IoT 측정기기 부착 완료 신고서 1부.
7. 소규모대기배출시설관리시스템 전송확인서 1부.
8. 위임장 1부.
8의2. 위임장(사물인터넷 IoT 부착지원) 1부.
9.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
9의2. 보조금 반납 확약서(사물인터넷 IoT 부착지원) 1부.
10.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측정위치(측정공) 선정기준 1부.
11.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 배점표 1부.
12.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지침 1부. 끝.